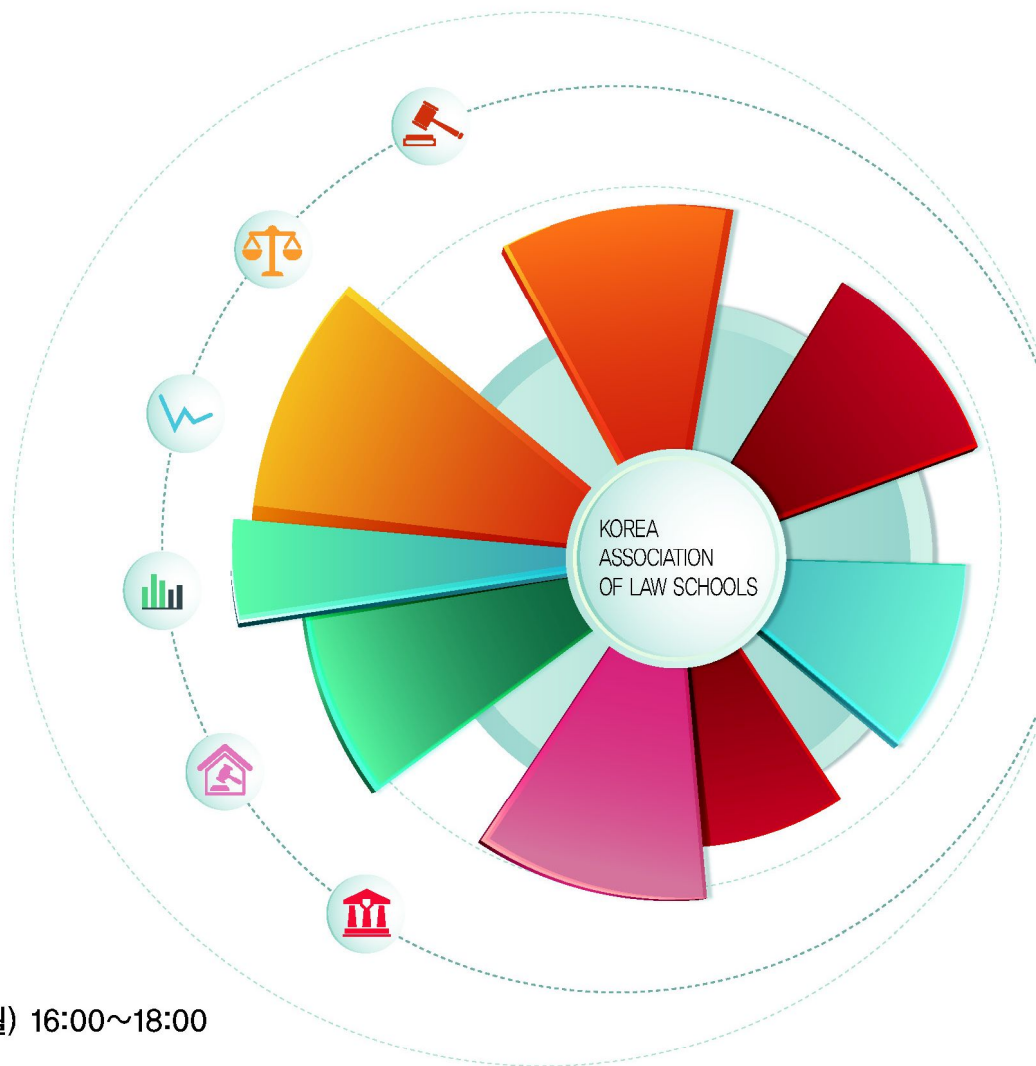


...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발표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16:00~18:00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발표회

□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16:00~18:00

□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행사시간	행 사 일 정	비 고
16:00~16:10 (10m)	[개회식] 인사말: 오수근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사회: 김명기 국장 (법전문위원회)
16:10~17:40 (1h 30m)	[주제발표 및 토론] - 연구발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 김재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강경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김은실 사무원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 박현경 교수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 임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진운)	• 좌장: 최봉철 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40~18:00 (20m)	[청중 질의응답]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 언론인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해주실 성균관대학교 김재원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최봉철 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교수님,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은실 사무원님, 영산대학교의 박현경 교수님, 법무법인 진운의 임지영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론적인 차원에서 야간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발표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각론으로 들어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연구과제로 진행해 온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 연구결과로 연구책임자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원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입학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원격 교육을 통해 법학 공부를 하는 것인데 공간적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를 넓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온라인 법전원이 개설됨으로써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록금 인하 실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의 꿈을 펼칠 수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1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오 수 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발표) 김재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김 재 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시작하면서

2009년 3월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제1기생들이 졸업한 2012년부터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가진 6천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6천여 명이 재학 중이다. 그런데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법안¹⁾으로 제출되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소원²⁾도 제기되었다. 사법시험 존치논란은 사법시험 준비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사이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³⁾. 매우 불행한 사태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신규 변호사 감축 요구⁴⁾도 이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장단점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지 7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 동안의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지난 6년반 동안 운영에서 드러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총체적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주간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 야간 및 온라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옥상

* 金宰源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 법조윤리, 장애인법,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법사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JSD)를 받았고,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박영선, 오신환, 함진규 의원 등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 “사법시험 폐지 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2015. 8. 27.

3) 임장혁, “사법시험 폐지나 유지나, 로스쿨-법학과 정면충돌”, 중앙일보, 2015. 9. 1.

4) 임순현, “제24회 변호사대회, 정부와 국회에 ‘변호사 수 감축’ 요구”, 법률신문 2015. 8. 24.

옥(屋上屋)으로 기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법이 법률가들의 출세나 생계를 위해 존재하지 않듯이, 법학전문대학원도 그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법률가들은 어떻게 기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법학교육제도 및 법률가양성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에서 모든 개선방안이 출발해야 한다. 이 발표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연구의 하나로서 진행해 온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이 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발표자가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발표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⁵⁾

II.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1. 시험과 공정성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시험제도 폐지와 로스쿨 도입 방향을 발표⁶⁾한 후,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학사 후 법학교육’방안, 노무현 정부 시절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⁷⁾까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7년째 운영되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는 시험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크다. 이것은 고등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사법시험의 시행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온 것이지만, 오랜 세월 시행된 ‘과거제도’에 대한 문화적 유산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법시험을 ‘현대판 과거시험’으로 여기는 경향은 사법시험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저항감으로 작용했고 작금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음서제 논란도 이러한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고려 광종 9년(958년)부터 시작되고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천여 년 동안 과거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방식이었다. 신분제 사회인 전근대 사회에서 공정한 시험을 통해 통치 관료를 뽑는 것은 음서를 통한 세습제에 대한 비판과 보완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인재 등용의 개방성을 확대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체에 초래한 폐해도 지대하였다.

첫째, 치열한 경쟁, 어려운 시험 제도로 인해 과거시험은 응시자들에게 수많은 실패

5) 이 연구는 선행연구(한상희, “야간로스쿨 설치 방안: 법률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법과 사회』 제46호, 373-423면, 2014)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한상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6)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 미래미디어, 1996.

7)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한국 로스쿨 탄생의 기록』 유니스토리, 2013, 21-34면.

와 좌절을 안겨 주었다. 중국 송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 시험 1단계인 원시를 통과할 확률은 0.2-0.3%, 2단계인 성시를 통과할 확률은 1-2%, 마지막 3단계인 회시와 전시를 통과할 확률은 5-6%였다고 한다.⁸⁾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다.

둘째, 과거제가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초래한 문제점이다. 과거 준비는 관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공부라 아니라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가 되었다. 당연히 합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행위의 만연을 가져왔다. 시험으로 평가되지 않는 다른 영역은 무시되고 침체되면서 학문과 사상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였고 경직성, 획일화를 초래했다. 이는 중국 사회가 봉건 전제정치와 경제의 기초 속에서 개혁과 변화에 둔감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사회역량과 사상이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억지하였고 서세동점의 상황에 효율적 대처를 어렵게 하였다.⁹⁾

셋째, 과거 응시가 개방적이었다고 해도 신분 상승의 진정한 사다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어느 시대에도 참여가 금지된 집단은 존재했다. 노비, 하인, 창녀, 광대 등 천민 집단은 시험을 칠 수 없었다. 공정성에도 여전한 문제점이 있었다. 수험생과 시험관이 공모하거나 여러 가지 부정 수단이 동원되었다. 무엇보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진입장벽이 있었다. 경제적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가령, 통방에 의해 선비를 뽑았던 당(唐)대에는 연줄관계 형성과 추천인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돈이 필요했다. 또한 수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다.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는 생원은 24세, 거인은 30세 전후, 진사는 35세였다고 한다.¹⁰⁾ 그 당시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과거를 위해 소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비용문제가 심각했는데 다년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도로 가는 왕복 여비, 숙비, 시험관에게 줄 사례비, 여러 담당관에게 줄 축의금, 연회비 교제비 등이 필요했고, 회시, 전시를 위해 수도까지 갈 경우 그 비용은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중국의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선발과 시험제도에 관한 담론이 14세기초 중국의 그것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중국 원나라 때인 1315년 과거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을 보면, 과거가 시험 준비를 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유용하나, 고위 관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¹¹⁾ 조선시대에 조광조, 율곡 이이, 정약용, 성호 이익 등도 같은 폐해를 지적했다.

8) 정현모 외, 『공부하는 인간』, 예담, 2013, 152면.

9) 진정, 『중국 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32~34면.

10) 장중례, 『중국의 신사』, 신서원, 1993, 233면.

11) John W. Dardess, *Confucianism and Autocracy: Professional Elites in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58.

시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을 뽑을 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공공성이 의심스럽다면, 정성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입시도 수능능력시험 점수만으로 뽑지 않는 시대에 법률가를 시험에만 의존해 선발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 속에 모든 법령이 다 들어 있고, 판례 원문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다. 더 이상 법령과 판례의 암기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복잡다기한 법률문제를 유능하게 처리하고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평가와 수준 높은 교육이 필수적이다.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올바른 것이었다.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2. 진입장벽과 고비용

(1) 희망의 사다리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문제점으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로 인식된다.¹²⁾ 패자부활전 혹은 재기(the second chance)가 불가능한 사회는 그 당사자 개인에게만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도 해롭다.

법학전문대학원 외부에서는 ‘면접’ 평가 같은 것에 정실이 작용할 수 있어서 연줄이나 힘이 없는 사람은 입학이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가 입학했다면 그것은 입시부정이니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지원자의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수년간 입시에 직접 관여해 본 발표자의 경험으로는 정량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입시전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혼자서 책상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능력이나 암기력을 포함한 학습능력과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 (LEET)의 성적과 학부 성적(GPA)이다. 대학 때 학점을 잘 받은 사람이 남을 잘 도와주는 좋은 법률가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일단 학부 때 성적이 나뉘었던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법학적성시험은 수능능력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또 순발력도 필요한 시험이라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 적성시험의 이런 속성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잘 본 사람, 세칭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따라서 정성평가에서 명문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더라도 결

12) 오일만, “현대판 음서라는 로스쿨 제도”, 서울신문, 2015. 1. 21. 31면.

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법률가의 길을 가기로 한 사람에게는도 매우 불리한 시험이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도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잠재력을 평가해야 마땅하다. 과거의 성적은 잠재력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훌륭한 법률가가 될 자질과 열성을 갖춘 지원자를 가려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 잘 하는, 즉 시험 잘 치는 사람을 뽑는데 치중한다. 계속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려는 의도도 여기에 작용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훌륭한 법률가로서의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방법 개발을 소홀히 해 온 것에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량적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를 찾아내는 정성적 평가도 사실상 정량적 평가와 다를 것이 거의 없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대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법률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실상은 대학입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시에 시험 잘 치는 능력을 보여 준 지원자가 아닌 이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걸어차는 것이 맞다.

(2) 비용 절감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에 고비용 제도로 설계되었다.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산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¹³⁾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시에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학교에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도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지원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비 지원은 다른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나온 돈,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지원될 돈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대다수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장학금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적장학

13) 김건식, “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로스쿨과 법학교육』, 아카넷, 2008, 25-26면.

금을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영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려는 목적으로 전문 직업 교육기관에 진학했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한정된 재원인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옳다. 타마나하 교수가 미국 로스쿨 비판에서 주장했듯이, 입학전형에서 다른 로스쿨에 갈 가능성이 있는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비용을 절감하고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그것은 교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서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은 교수들의 인건비다. 이 부분을 과감히 줄이지 않고 고비용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10명 정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원하는 학교는 교수를 2배 이상 더 충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법학부보다 많게는 두배 이상 인상되었지만,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학부 또는 법과대학의 입학정원은 200~300명이던 학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입학생이 최고 150 명에서 최저 40명으로, 즉 1/2에서 1/5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 수는 급감하고 교수 수는 급증했기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은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구조에서 장학금 확충이나 등록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20 정도까지 완해해도 된다. 교수 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방안이 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수한 분야나 세부 전공의 강의는 그 전공이 있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이런 방식을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안 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법령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 가량을 다른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교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년지대계인 법률가양성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법문서 작성, 임상법학 교육 등 소수의 학생들을 개별지도해야 하는 교과목들이 있다. 이런 과목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들을 겸임교수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교수 인건비 절감 뿐만 아

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2항.

나라 현장감 있는 양질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미국 로스쿨의 오랜 경험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장학금을 확충하고,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기회비용의 문제다. 현 제도에 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휴직해야 한다. 출 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휴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은 야간 및 온라인 법학교육이다. 기업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자격 없는 전문가들, 유사법조 직역 종사자들,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 자격 취득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미국의 운영 실태

1. 야간 로스쿨 운영

(1) 야간 로스쿨 현황

2013년 ABA 통계에 의하면, ABA가 공인한 로스쿨의 JD과정 재학생 총수는 128,641명인데 이 중 14%에 해당하는 18,450명이 야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¹⁵⁾ 이 통계는 미국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학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U.S. News & World Report가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야간 로스쿨 프로그램은 현재 85개이다. 이 85개 로스쿨은 ABA가 공인한 201개 로스쿨 중에서 야간 프로그램에 2014학년도에 재학생이 20명 이상인 곳을 선정한 것이다.

(2) 야간 로스쿨의 위치

이들 85개 로스쿨들의 평가 결과인 소위 랭킹(ranking)을 보면, 흥미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학교의 위치가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가를 받은 85개 로스쿨 중 상위 20위에 속하는 로스쿨들의 위치를 보면, 5개가 수도인 워싱턴 D.C.와 통학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4개 로스쿨은 뉴욕시와 그 인근 지역, 시카고에 위치한 학교가 2곳이다. 그 나머지 로스쿨들의 위치도, 필라델피아

15) <http://www.usnews.com/education/best-graduate-schools/articles/part-time-law-programs-methodology> (2015. 9. 9. 최종 방문)

아, 애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덴버, 시애틀 등이다. 이들은 주에서 가장 대도시이거나 남부나 서부의 대표적인 상업중심지이다. 이것은 주간 로스쿨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더 분명해진다. 미국 명문 로스쿨을 지칭하는 소위 “Top 14”¹⁶⁾에 속하는 학교들 중 5곳¹⁷⁾이 인구 1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에 위치한다. 상주인구가 5만명과 3만명인 아주 작은 지역에 위치한 로스쿨도 두 곳¹⁸⁾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야간 로스쿨의 성공적 운영과 대도시 사이의 아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

여러 평가지표를 통해 볼 때, 가장 우수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학교, 소위 “Top 3”는 조지타운, 조지워싱턴, 포뎀(Fordham)이다. 이들 중 앞의 두 로스쿨은 연방수도 워싱턴 D.C.에 나머지 하나는 ‘경제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시 맨하탄에 위치한다. 전업(full-time) 학생들이 수학하는 주간 로스쿨의 경우는 소규모 도시에 로스쿨이 위치해도 영향이 적지만, 야간 로스쿨의 경우 주간에 직장을 다니며 야간에 통학이 가능하지가 학교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1870년에 개교한 조지타운 로스쿨은 주간 프로그램 없이 야간과정만으로 운영했고, 설립 목표를 “정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입학책자에 명시했었다.¹⁹⁾

관공서나 기업 등 직장이 많은 곳에 위치한 로스쿨들이 성공하는 것은 입학생의 수준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로스쿨들은 우수한 지원자 집단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대학 졸업시에 로스쿨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으나 법률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이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취직한 이들, 출산과 자녀양육 등 가정 형편상 풀타임 수학이 어려운 이들 등등이 야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취업이 안 되고 주간 로스쿨 입학에도 실패한 이들을 수용하는 야간 로스쿨 프로그램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3) 수업 운영

주간 프로그램이 3년(6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수학할 것은 요구하는 반면, 야간 프로그램은 파트타임으로 4년(8학기) 동안 다닐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7 학기와 한번의 여름 학기를 다니며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수업시간은 1교시를 5시45분에 시작하는 조지타운 같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 로스쿨이 저녁 6시에 첫 수업을 시작한다. 마치는 시각은 9시반에서 10시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수업

16) Yale, Harvard, Stanford, Columbia, Chicago, NYU, UPenn, Duke, Berkeley, Virginia, Michigan, Northwestern, Cornell, Georgetown 로스쿨

17) Stanford, Berkeley, Virginia, Michigan, Cornell.

18) Charlottesville에 위치한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와 Ithaca에 있는 Cornell Law School.

19) <https://www.law.georgetown.edu/academics/academic-programs/jd-program/part-time-program/index.cfm> (2015. 9. 9. 최종방문)

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금요일 저녁에는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로스쿨은 야간 학생들만을 위해 토요일 수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경우, 야간 프로그램 등록생은 1학년 동안 학기당 9~10학점을 이수 하여 총 19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주간 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 총 30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수강 과목은 토론티 로스쿨의 경우, 주간 학생은 1학년 동안 8개²⁰⁾ 필수 과목을, 야간 학생은 6개²¹⁾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대다수의 로스쿨이 야간 강좌를 이와 유사하게 운영한다. 1학년 동안 야간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에 보통 이틀 저녁만 등교한다.

(4) 입학전형, 실무수습, 등록금 등

야간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풀타임 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면 평등권 침해와 교육기관의 차별금지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을 가진 지원자가 입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 속에는 지원동기를 기술해야 한다. 왜 야간 로스쿨을 지원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적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받기 어렵다. 야간 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주간으로의 전환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1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주간으로 전과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2학년부터 주간으로 옮겨야 하는 타당한 사정변경 여부를 학생담당 부원장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학지(law review) 활동은 야간 학생들도 참여에 어려움이 거의 없다. 하지만 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각종 임상법학교육(clinical education)과 실무수습의 경우에는 야간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과 실습은 토요일에 하거나 여름 학기 중에 직장 휴가를 얻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간 과정의 등록금은 학점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 로스쿨의 관행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수강하는 학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주간 학생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야간 학생들은 주간학생에 비해 적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20)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Legal Process, Legal Writing, Property, Torts.

21) 위 8개 과목 중 Civil Procedure와 Constitutional Law는 2학년 때 수강한다.

2. 온라인 로스쿨 운영 실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부터 사용해온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표에서는 편의상 모두 온라인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로스쿨에 관한 한 미국의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 거의 없다. 미국 법학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BA가 온라인에만 의존하는 법학교육기관을 단 한 곳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주들이 온라인 수업만을 이수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불허한다.

강의실 안팎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상호 소통과 대면 학습기회를 통해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적절히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 ABA의 기본 입장이다. 인터넷 보급이후, 이러한 입장은 여러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고 ABA는 기존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최대 4학점, 졸업시까지 총 12학점까지를 ABA가 인가한 로스쿨 졸업학점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ABA의 이러한 입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든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강의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혼합한(“blended”) 수업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법학교육만 전통적 방법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가을에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 등이 온라인을 이용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ABA는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ABA가 조만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제한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기당 4학점의 최대 이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이수 학점도 기존 12학점에서 20학점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²²⁾

IV.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별도로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또한 온라인 교육방식이 일반 교육현장에서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현행 주간 풀타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이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주간과 야간 과정을 병행하면, 야

22) “Online Law Schools Inch Closer to ABA Accreditation,” at <http://www.geteducated.com/justice-law-legal-studies/442-online-law-schools-aba-accreditation>

간 과정이 주간에 종속되고 부실해지는 것을 미국과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되는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현행 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별도로 설립해야 성공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현행 입학제도의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적성시험이나 학점 등 정량적 지표에서 벗어나 경력이나 삶의 여정 등 정성적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최소 점수 또는 등급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입학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적성시험의 성적이 입학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학적성시험은 나이가 어리고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학부 성적과 어학 점수도 필수적 평가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 학부 성적이나 어학 점수가 높은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 전에 졸업한 대학의 성적 때문에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로 의존해 온 정량지표들 없이 입학전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존립 근거와 선발하려는 대상은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의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입학전형의 초점은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훨씬 더 잠재력 평가에 두어야 한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통해 지원 동기, 사회 활동과 경력, 가족내 역할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면접 점수를 입학전형 총점의 40~50%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주간과정으로 전과할 목적으로 야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입학생 중 최소한 70~80% 이상은 취업자나 가사종사자 등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이 어려운 이들이어야 한다. 이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사후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도 퇴색하고 운영도 부실해질 것이다.

2. 등록금 등 비용

앞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고비용 구조가 야간·온라인 교육에 답습되어서는 안 된다. 전임 교원 확보 비율을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학교 운영의 인건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전임 교원은 필수과목 및 주요 교과목 담당교수를 중심으

로 채용하고, 전문 교과목의 수업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 실시한다. 야간 강좌에는 변호사들을 겸임교원으로 활용하기가 더 용이해서 교원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학교 운영의 고정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를 줄여서 등록금 인하여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장학금 수여 비율을 높이고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기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학금은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을 낮게 책정하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직장이나 가정과 학업을 병행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재학생 각자가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교육 과정

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총 90 학점이상을 졸업 이수 요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학기간이 최소 8학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과정은 필수 및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외 교과목은 다른 로스쿨에 설강된 강의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총 30학점 이내에서 인정받도록 한다.

수업시간은 주중 저녁 7시~10시50분 및 토요일 10시~4시50분으로 하고 다양한 온라인 강좌의 병행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중 2일과 토요일 등교만으로 가능하게 강좌를 편성한다. 2개의 토요일 강의와 2개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주중 1일 등교만으로도 가능하게 등교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교육조교와 강의조교의 비율을 높여서 직장이나 가사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육아시설과 보육지원 인력도 확보도 필요하다.

학업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시험 과목 등 주요 과목에 한해 Pass/Fail 및 완화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ABA가 우려하듯이, 실무교육의 질 문제는 야간·온라인 교육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토요일을 이용하고 직장인의 경우 연가 등 휴가를 활용해서 현장실습 등 실무교육과 모의재판 같은 비교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일정조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4. 학적 이동

학적 이동은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초기에는 학적 이동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입

학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징검다리로 이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학생은 다른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편입을 허용하고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년간 30학점이내 학점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그 필요성(취업, 출산/육아/가사, 질병 등)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적 이동과 편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로 하며 해당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보충을 불허한다.

5. 설립인가 및 입학정원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시에 이미 경험했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학교에 몇 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 이 연구 발표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이 현 입학정원 내에서 전부 야간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신규 설립이나 인원 증원 문제는 변호사 수 증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 여러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먼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총 응시자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야간 총 450명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 총 450명의 입학정원을 총 6개교에 분배하여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6개의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이 대학의 단독이나 연합(2개교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곳에 인가하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선구자이며 국립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그동안 축적된 교육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다른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²³⁾이 제안된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15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하고, 법학과와 존속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교의 개교 시점부터 법학부/법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300명의 입학 정원을 서울/경기/강원권에서 지원하는 2개교에 각 75명의 입학 정원으로 인가하고, 영남, 호남(제주도 포함), 충청권의 세 개 권역별 3개교를 각각 정원 50명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도입 시기

현행 주간 풀타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에게 법조인의 문호

23) 김태년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를 개방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을 경험에 비춰 적절한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2016년 6월말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가요건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말까지 학교를 선정한다. 2017년에는 선정 학교들이 1년간 개교 준비를 하여, 2018년 3월에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학한다.

V. 마치면서

법률가라는 직업을 갖는 것은 개인의 신분 상승이나 사적 이익의 확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률가양성 제도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각 계층과 분야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민주적 대표성(representation)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법률가 양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문호를 확대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강경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강 경 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개인적으로 사법시험과 같은 법조인 선발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잘 정착되기를 바랐다. 사법시험에 대해서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법시험을 보신 분들을 보면 독학이나 진배없이 공부를 하고 동시에 교과서보다는 수험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로스쿨과 같이 전문가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분들의 특혜는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법시험은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시존치론에 반대했고, 로스쿨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오늘 토론회 주제에 대해 학과 내에서 가끔씩 이야기가 나오면, 당분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었다. 로스쿨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방통대 자체의 입장은 많이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또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하므로 모쪼록 좋은 귀결이 됐으면 한다.

사이버야간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사시보다 현재 로스쿨이 고비용이고,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이버 로스쿨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희석시키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야간 로스쿨의 도입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존 로스쿨에 장학금을 많이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김재원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니, 로스쿨은 꼭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닌 입학단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고 탈락되기 쉬운 구조라고 느껴졌다.

등록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입학에서도 서류심사, 리트 성적, 면접 등을 봐도 잘 살아오고 여러 가지를 갖춘, 넉넉하게 산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형 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진입 자체의 문제점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문호를 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사이버 로스쿨을 논의할 때 방통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방통대는 72년에 개교를 해서 43년이 됐으며, 방통대 법학과는 82년에 개교를 해서 33년이 됐다. 지금까지 약 3만 8천명의 졸업생을 냈다. 한 해에 1,000명 정도씩이니까 엄청난 숫자이며, 이는 일반 법학과 5개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방통대 법학과는 지난 33년 동안 ‘시민 로스쿨’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대부분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학 법학교육을 접합시켜서, 실생활에 흘러들어가도록 교육했다. 로스쿨과 다르게 방통대 법학과는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의 법을 교육했고,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

방통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방통대 졸업 후 응시하면 된다고 지도도 했었다. 만약 방통대에 사이버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사이버 로스쿨이 ‘저소득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오픈 로스쿨(Open Lawschoo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영어로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라고 표기한다. 즉,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는 데에 일체 모든 조건을 다 없애고,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기초 교육부터 진행한다.

‘오픈 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체인데, 방송이나 서신 등을 통해 원격 교육을 한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방송, tv 등을 통해서 오픈 유니버시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방통대의 경우 여러 사이버 대학과 동시에 분류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사이버 대학과는 다르다. 방통대는 그야말로 ‘오픈’이다. 국민의 차원에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입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동시에 등록금이 저렴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안 되면 오픈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오픈 개념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열어놓는 대학인 것이다. 물론 개념 규정이 쉽지는 않다.

김재원 교수님께서 방통대 야간온라인 로스쿨 정원으로 150명 정도를 계획하셨고, 이 150명을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150명의 선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대학원’ 차원으로 규정지어버리면, 오픈 개념이 사라지고 정원제로만 선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픈 개념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붙은 사람만 입학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이버 대학 설립 취지와 굉장히 빗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어려운 사람만 뽑는 것 또한 무모하다.

그러므로 원래의 개념인 ‘오픈 개념’과 라인 로스쿨 도입을 합치시키면 전 국민들에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런 방식이다. 입학 후 4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 등은 1년 정도를 더 공부해야 함을 받아들인다. 또 학부 등록금이 현재 40~120만원으로 거의 무상에 가깝다. 기존 로스쿨이 학기당 8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사이버 대학은 불가피하게 약 4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방통대는 200만원 이하로 책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학교 운영도 생각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겠지만 일단 오픈으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4년 동안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000명이 입학한다고 했을 때, 리트 성적과 같은 여러 가지 성적들을 다 없애고 ‘국어해독능력’ 중간 수준 이상이면 다 입학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후 1학년에 한 번 거르고, 2학년에 한 차례 또 거르고, 3학년 정도 가면 2배수 정도를 유지해서 4학년 막바지에 150명만 졸업시키면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변호사시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시험 자체를 이원화시키면, 변호사 자격을 받고도 낙인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스쿨과 똑같이 변호사시험을 똑같이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로 왔으니까 봐준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계속 오명이 남아서 좋지 않을 것이다.

교수 진영의 문제도 있다. 교수는 학교 운영 차원에서 40-5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지만,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방통대에 사이버 로스쿨을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학과 교수들을 고용하고, 가급적이면 시간 강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기에 나름대로 정책될 때까지 기존 로스쿨 교수님들이 협력을 맺어서, 사이버 강의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일반 주간 로스쿨과 같이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교수님도 오픈 개념을 적용해서, 학위를 받으신 훌륭한 분들이 방통대 오셔서 활약을 많이 하시면 서로 좋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에서만 꼭 필요한 교육자가 있다. ‘튜터’라는 것인데, 기존의 대학에서는 조교 정도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튜터가 별로 필요가 없다. 온라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최소 눈높이 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교수들이 강의를 해도 보조자를 붙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질의응답을 해주는 전화 상담 등을 해주는 튜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수의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식은 사이버+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이버·야간 로스쿨이지만 오프라인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3-4학년 정도 되면 현장학습이나 변론대회 등을 해야 하므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변론 훈련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은 오픈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사이버 대학은 피닉스 대학이라고 해서 상업형 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오픈형으로 시작된 사이버 대학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구매받지 말고, 오픈 개념을 도입해서 로스쿨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김은실 사무원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김 은 실 사무원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아마도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는 방통대를 다녔었던 학생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라는 취지에서 초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총리부, 경리부, 인사부, 심지어 소규모 업체 비서까지 하다 보니 거의 혼자 회사를 운영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했다. 또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 아니라 상고를 나왔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해야 했었다.

우연히 경리 업무를 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대부분 도산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의 전화를 받으면 ‘가압류가 뭐예요’, ‘가처분이 뭐예요’등의 질문이 쏟아져, 전화받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늘 인터넷 검색창을 띄워놓았다. 4년 정도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을 대할 때마다 늘 스스로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

그래서 한 변호사 사무실의 말단 직원으로 가서 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자는 마음,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라도 알자는 마음으로 방통대 4년을 다니게 됐다. 중간에 업무량이 늘어서 좋은 성적도 아니었고, 4년 만에 졸업하지도 못했다.

5년 만에 방통대를 졸업했지만, 다시 처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그 수입으로 내가 보고 싶은 전공 책을 사고 학비를 내 돈으로 내고 살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방통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방통대의 경우 고학년이 되면 수업이 저녁으로 내려온다. 수업을 저녁에 받으면, 6시 7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집안에 차레라도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날에는 출석을 하지 못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또 방통대 특징이 워낙에 객관식에 의한 성적을 주기 때문에 입학할 때는 쉽게 입학해도, 시험을 보면 한 학기에 떨어져 나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 저녁에 뜻 맞는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해도, 졸업할 때 되면 10명 정도만 남았다.

야간사이버 로스쿨을 만든다고 하면 나처럼 다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주간 로스쿨을 나오신 분들도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사무 여직원을 쫓아가서 우편 접수하고, 기록열람복사부터 시작한다. 주간에서조차도 실무적인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야간에서 가능할까 걱정된다.

사무실의 사건들은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하지만, 사무직원들의 손을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개원하게 되면, 확실히 나와 같은 실무 직원들을 법률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방통대 법학과 4년을 졸업하고도 로스쿨 입학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내 월급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4년간은 전적으로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중압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자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정말 좋은 제도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방통대 교육과정이 4년이라고 해서, 야간온라인 로스쿨도 굳이 4년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한과목당 3학점씩 계산해도 한 학기 6과목, 1년에 12과목을 이수해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이 제도 자체가 비용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6학기에 3년 제도로 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실습 부분도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휴가 기간을 몰아서 실습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중간 중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본다면, 법원에 실질적 재판이 열리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활용해서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답답한 부분은 고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방통대가 갖고 있는 150명이라는 인원을 서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라고 본다. 전국의 모든 학생 150명이 방통대에 온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국, 세계적으로도 방통대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 방송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자 보는데, 학비는 2-3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또 번시에 국한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온라인과 야간을 병행한다고 할 때, 분명히 주간반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길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우려도 있다. 주간 로스쿨 졸업생과 야간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시선차이도 발생할 것이다. 현장에서 사시 졸업생과 로스쿨 졸업생이 부딪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과연 또 다른 대립각의 생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고비용이 현실성 있게 낮춰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논해봐야 할 것이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박현경 교수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박 현 경 교수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야간온라인 법전원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시 존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영산대학교에서 지난 10년간 사시 합격자를 3명 배출했고, 로스쿨에 15명 정도를 입학시켰다. 영산대학교 입학하는 재원들의 성적이 3.5등급에서 6등급인데, 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사시 합격,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2년 전에 사시에 합격했던 학생인데, 공고를 나와 24살에 영산대학교에 입학해서 3년 만에 사시에 합격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신 환경에서 사시 합격했다. 다른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사시에 합격한 것이 바로 희망이 아닌가 생각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시 폐지에 대해서 로스쿨이 내놓는 제안이 야간온라인 로스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시 폐지가 확정된다면, 그래서 야간온라인 로스쿨 개원이 확정된다면, 사시의 충분한 대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이나 여성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발제자가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정원을 450명으로 봤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 전체 정원이 2,450명이 된다. 현재 합격자를 80% 선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연마다 2,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게 된다.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 취업률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야간 로스쿨을 통해서 정원 확대가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현실성 여부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영산대도 로스쿨에 도전했었다. 지역권에서 10위를 했는데 9위인 동아대까지 로스쿨에 선정됐고, 영산대는 약 2-3년간 암흑기를 보냈다.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재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격을 받은 학교 중 하나다. 과연 야간 로스쿨의 실현

가능성의 여부, 주간 로스쿨과의 관계, 정원을 타협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시 존치를 통해서 소모된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야간 로스쿨이 생긴다면 마치 야간 로스쿨이 주간 로스쿨의 보충·보완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교육 자체가 보충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방통대 교수님은 2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200만 원 선에서 가능한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로스쿨을 나오면 당연히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정성 평가를 잘 해서 정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잘 뽑아서 사시를 대체하는 제도로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고, 만약 80%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자격증 남발이 되지 않을까? 서울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지방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공급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2,450명의 80%가 합격자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질적 수준 담보도 문제다. 주된 과목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로스쿨 본질이 삼법 잘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삼법 이외에 다른 법들도 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사이버 교육으로 돌리고 방통대 강의를 공유하면서 가능할까? 주간 로스쿨 교수님들은 논문도 많이 쓰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교육을 야간 학생들은 사이버로 받는다는 것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발제자 말씀에 따르면 ‘로스쿨 못가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야간사이버 로스쿨이다’라는 것인데 법대가 존재하는 대학, 즉 우리가 말하는 서울, 국립대를 뺀 법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진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통대에서 로스쿨을 만들면 본교를 어디다 두냐? 서울 지역에 두면, 서울에 로스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지,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선발해서 150명만 졸업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입학 총

정원 제한이라는 현재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입학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방통대의 경우는 다 입학시키고 졸업시킬 때에는 150명만 졸업시킨다? 이건 공평하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주간 로스쿨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오히려 로스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야간 로스쿨에 대해서 강의를 오픈 대학처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방통대 스스로 로스쿨은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온라인 야간 로스쿨이 생기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 논의가 사시 존폐의 논의에 그친다든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임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진운)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임 지 영 변호사 (법무법인 진운)

로스쿨 출신으로 변시 2회에 합격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사회에 나와서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국회에서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에서 공청회 결과를 놓고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시 존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시 존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다. ‘희망의 사다리라는 부분이 사실상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논쟁이 오가는 부분인 것 같다. 또 로스쿨 법이 날치기 통과가 됐다고 주장하나, 합의에 기초해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보고서, 수십 번의 공청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사시,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한 것의 근거는 사시는 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로스쿨 제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있고,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축소시킨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실제로 출신대학을 보면 사시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이 더 다양화되어 있다. 물론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시 존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완 문제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 기수에 100명이 있고, 1-3학년까지 있다. 10% 정도는 아이의 엄마, 임신 출산과 연관이 있는 학생이다.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임신과 출산에 연관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고 그들의 고충을 많이 들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학생·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도 있다.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한 학생이 3년 안에 졸업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변시에 응시를 한다든가 학점이수를 4년에 걸쳐서 나눠서 듣는 방식을 취했다. 학교에서도 수유실을 마련한다든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했다. 수업이나 시험에 있어서도 이런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런 분들이 로스쿨이 아니라 사시 제도 하에 있었다면, 기약 없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로스쿨 제도가 훨씬 더 아쉽고,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마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는 비용의 문제이다. 과연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주간 로스쿨에 비해 비용적으로 저렴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국가에서 지원이 있거나, 학교 자체의 장학금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운영의 문제이다. 특히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등 주간 로스쿨에서 중점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과연 야간 로스쿨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방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로스쿨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중간기말 시험이 매학기 2번씩 있고, 졸업 때까지 총 12번의 시험이 있다. 나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굉장히 힘들다. 모든 학점이 엄격한 상대평가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되고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서 과연 학업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취업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로펌이라든가 법원에서는 학교 성적을 중요시한다. 야간 로스쿨의 성적 운영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 보완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다른 주간 로스쿨과 비교해 학업성

취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시 합격률의 문제가 있다. 지금 최대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합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고, 총 입학 정원의 문제라든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문제라는 복잡한 문제가 함께 맞물려있다. 변시 합격률 문제가 야간 로스쿨의 최대 장애라고 생각한다. 유급 문제 등을 차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변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또 그만큼 주간 로스쿨에서 합격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두서없이 말했지만 종합적으로 변호사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법조인이 사시 출신 변호사에 비해서 자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간 온라인에서도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emo

memo

memo

memo